

부산지방법원 2021. 6. 2 선고 2020가합4941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고등법원 2021. 12. 23 선고 2021나54586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1. 6. 2 선고 2020가합49412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

담당변호사 김훈희

피 고 1.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훈

2.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

담당변호사 노태홍

변론종결 2021. 4. 28.

판결선고 2021. 6. 2.

주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피고 주식회사 B와 D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7. 11. 24.자 채권양도양수계약과 피고

주식회사 C과 D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7. 12. 8.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각 취소한다.

2.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2,985,1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

1) 원고는 D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있어 2017. 8. 30.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(부산지방법원 2017가단24805호 사건).

2) 위 사건은 조정예 회부(부산지방법원 2017머69196호)되어 2018. 3. 14. 'D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126,271,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9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(부산지방법원 2017머69196호), 종결되었다.

나. D 주식회사의 미지급 용역대금채권에 관한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

1) 원고는 2019. 7. 1.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타채57729호로, 부산지방법원 2017머6919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초하여 D 주식회사의 (가칭)E지역주택조합(이하 '이 사건 조합'이라 한다)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

159,949,792원(= 원금 126,271,600원 + 2017. 9. 16.부터 2019. 6. 26.까지의 지연손해금 33,688,192원)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,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9. 7. 4. 이 사건 조합에게 송달되었다. 그런데 원고는 채무자 주소지를 보정하지 않았고,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9. 9. 19.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전부명령 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.

2) 원고는 2019. 10. 2. 다시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타채8996호로 위와 같이 압류된 D 주식회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159,949,792원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고(이하 ‘이 사건 전부명령’이라 한다), 위 전부명령은 2019. 10. 7.경 이 사건 조합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8.경 확정되었다.

다.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

1) D 주식회사는 2017. 11. 24.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‘피고 B’라 한다)에게 D 주식회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150,000,000원을 양도하고 2017. 12. 16. 위 조합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.

2) D 주식회사는 2017. 12. 8. 피고 주식회사 C(변경 전 상호: 주식회사 F, 이하 ‘피고 C’이라 한다)에게 D 주식회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65,035,300원을 양도하고, 2017. 12. 18. 위 조합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(이하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통칭하여 ‘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’이라 한다).

라.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합 등을 상대로 한 관련 소송의 결과

1) D 주식회사는 2018. 5. 2. 이 사건 조합 및 G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 256,85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구하는 정산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[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2873(본소) · 2019가합107936(반소) 사건, 이하 ‘이 사건 관련 소송’이라고 한다], 원고는 위 소송에 D 주식회사의 승계인으로 참가하였다.

2)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계한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 중 위 다.항과 같이 피고들에게 양수된

채권을 제외하고 41,814,700원¹⁾ 및 이에 대하여 위 나. 2)항 기재 전부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. 10. 8.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2020. 9. 10. ‘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위 41,814,700원 및 이에 대한 2019. 10. 18.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’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, 위 판결은 2020. 10. 6.경 확정되었다[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. 9. 10. 선고 2018가합102873(본소) · 2019가합107936(반소) 판결]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, 4호증, 을가 제4, 5호증, 을 나 제1호증의 1, 2, 제2호증, 제3호증의 1, 2, 3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 요지

가. 원고

D 주식회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채권은 D 주식회사의 유일한 적극재산이므로 D 주식회사가 위 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2,985,1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

1) 본안 전 항변

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.

2) 본안에 관하여

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채무이행에 불과하고, D 주식회사의 사해의사나 피고들의 악의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.

3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관련 법리

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'취소원인을 안 날'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,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, 그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(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).

나. 판단

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.

1)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3호증, 을가 제4, 5호증, 을나 제1호증의 1, 2, 제2호증, 제4호증의 1, 2, 제5호증의 1, 2, 3, 제6, 7호증, 제8호증의 1, 2, 제9호증의 1, 2,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늦어도 2019. 3. 28.경에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이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D 주식회사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.

①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참가하기 이전인 2018. 5. 29. D 주식회사의 채무자인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(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5807호). 위 소송에서 G 주식회사가 제출한 2018. 9. 11.자 답변서에는 “현재 D 주식회사는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채권양도양수를 남발하고 D 주식회사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한 채권자가 9명에 달하며, 총 채권액이 6억 원에 이릅니다. 추가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”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.

②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

용역비는 256,850,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하였음에 반해 당해 소송에서 D 주식회사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, 그리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자료와 동일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, 내용증명, 채권양도통지서 등이 제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원고 본인이 가지는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액 159,949,792원을 더하여 보면 주장 자체로 이미 D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이거나 채권양도로 채무초과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.

③ 또한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는 D 주식회사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 회신, 진술서 등의 자료가 충분히 현출되어 있었다. 특히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의 부산 수영구 2018. 9. 17.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‘D 주식회사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 후 수차례 (과태료 납부를) 독촉하였으나 체납이 발생하였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 징수가 어려움’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.

④ 나아가 D 주식회사 측에서 2019. 3. 13.경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는 “D 주식회사는 2017년도분 관할세무서인 수영세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-283,695,923원의 손실을 보았다”고 기재하고 있기도 하다.

⑤ 관할세무서였던 부산진세무서는 2017. 11. 30. D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153,974,770원에 이르러 이를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중 부가가치세 체납액 상당을 압류하기도 하였다.

⑥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참가한 이후 2019. 3. 20. 제출한 준비서면에서, “D 주식회사는 2017. 12. 18. 피고 C에게 채권을 양도하고, 2017. 11. 24. 피고 B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고, 그 무렵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”라는 취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진술한 사실도 있다.

⑦ 그 후 원고가 2019. 3. 28.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“피고 C, B는 D 주식회사의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의 채권을 양수받았는데 현재 이 사건 조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”라고 기재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.

⑧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

준비서면을 제출한 2019. 3. 28.경에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수차례 제출된 준비서면,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,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인 사실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

2)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2019. 3. 28.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. 9. 17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,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. 결국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,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신헌기, 판사 유주현, 판사 박광일

1) 엄밀하게는, 용역대금 256,85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7. 12. 15.부터 피고 C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2017. 12. 18.까지의 지연손해금 168,888원(= 256,850,000원 × 6% × 4/365일)에서 피고 C에 대한 채권양도 액수를 공제하면 원금 191,814,700원(= 256,850,000원 - 피고 C에 채권양도 액수 65,035,300원) 및 지연손해금 168,888원이 남게 되고, 여기에 원금 191,814,700원 및 이에 대한 2017. 12. 19.부터 피고 B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2017. 12. 29.까지의 지연손해금 346,843원(= 191,814,700원 × 6% × 11/365일)에서 피고 B에 대한 채권양도 액수를 공제하면 원금 41,814,700원(= 191,814,700원 - 피고 B에 대한 채권양도 액수 150,000,000원) 및 합계 515,731원(= 168,888원 + 346,843원)의 지연손해금과 원금 41,814,700원에 대한 2017. 12. 30.부터의 지연손해금 채무가 된다.